

문서번호

2021 - 032

[사]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2021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공고

2021. 08



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

1

개요

□ 사업 목적

-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에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선정됨에 따라 자금조달이 필요한 제주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사업을 진행

□ 용자규모 : 총 3억원

□ 지원대상

-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이며 최근 3개년도 평균연간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(업력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설립 기준 이후 매출액 평균)로 아래 지원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

▶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

- ①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상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**사회적기업**
- ② 「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」, 「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, 정부부처로부터 지정을 받은 **예비사회적기업**
- ③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**사회적협동조합**

▶ 위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

- ① 채무관련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
- ② 법인 외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, 다만 동일 채무자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출금 잔액을 차감하고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가능
- ③ 사회적경제기업이 휴, 폐업 중인 경우
- ④ 기업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평가 등급이 D등급(부실)인 경우
- ⑤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- ⑥ 사회적경제기업의 등기 상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경우
- ⑦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회적경제기업

□ 용자상품 안내

- 단기자금은 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만 활용 가능
- 성장기자금은 운전 및 시설자금으로 활용 가능

대출과목	상환방식	한도	기준금리 (동일)	상환기간	
				거치기간	총 상환기간
탐나는 단기자금	만기일시상환	5천만원	3.0%	-	24개월 이내
탐나는 성장기자금	거치식원리금 균등분할상환	1억원	3.0%	12개월	60개월 (거치 12개월 포함)
	거치식원금 균등분할상환				
	만기일시상환	1억원	3.0%	-	24개월 이내

□ 접수기한 : 2021. 08. 10.(화) ~ 09. 03(금) 18:00까지

□ 접수방법

-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(<https://www.jejuhub.org>)를 통해 신청 접수 후 원본제출(방문 또는 우편)
- 방문접수 주소: 제주시 중앙로 165, 1층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
- 이메일(sefinance@jejuhub.org)을 통해 상담 신청하시면 확인 후, 전화상담 실시 예정
- 문의 :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문성식 tel.070-4206-3780
(사)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정기범 tel.070-4206-7956

□ 평가 시 우대사항

- (사)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원기관(2021년 회비 납부 필수)
-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경영 컨설팅 사업 참여 기업
(경쟁력강화사업_소셜부스터 및 맞춤형 컨설팅 사업에 한함)

□ 용자지원 절차

○ 법인이 직접 자금신청·접수 후 직접대출(신용대출)



2

용자신청 서류

□ 용자신청 서류

- 대출신청공문(기관양식으로 제출)
- 대출신청서(첨부1)
- 회사소개 및 자금사용계획서(첨부2)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
- (예비)사회적기업인증서,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허가서
- 법인인감증명서(최근 2개월 이내)
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최근 2개월 이내)
- 정관 또는 규약 사본
- 이사회 의사록 사본(차입결정 내용 등 포함)
- 재무제표(직전 3개년)
- 계정별원장(직전 3개년, 엑셀파일 제출)
-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2021년 상반기)
- 법인 및 대표자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
- 금융거래확인서 각 1부(대표자 및 법인)
- 주주명부, 조합원 명부, 출자자 명부(출자금액명시) 사본 1부
- 신청 직전 월 급여대장,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/가입 내역 확인서 각 1부
- 기업소개서(자체양식) 있을 시 제출
- 외부 네트워크 활동 증빙을 위한 서류(외부 협약증서, 수상, 인증 내역, 사회성과 측정결과, 대표자 및 주요인력의 이력서 등)